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는 개산계약(概算契約)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이행기간 중 설계변동 등에 따라 예산소요가 증감하여 개산계약금액으로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더라도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의 증감분이 기존 개산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5 미만인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바, 앞으로는 설계변동과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제발생원가 증감분의 규모와 관계없이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도 원가 증감분이 기본 대비 100분의 3 이상이면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10. ~ 3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의2(개산계약금액의 조정)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·제4절·제4절의2·제5절·제6절·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동,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

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의2(개산계약금액의 조정)</u> ① <u>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 · 제4절 · 제4절의2 · 제5절 · 제6절 · 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변동, 설계변동,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예산 소요가 증감하여 개산계약금액(概算契約金額)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</u>	<u>제4조의2(개산계약금액의 조정)</u> <u>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 · 제4절 · 제4절의2 · 제5절 · 제6절 · 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동,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</u>